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-25호

『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5월 7일

## 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###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「행정절차법」 및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되는 교육자치법규의 제·개정 또는 폐지에 앞서 시민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교육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시책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예고의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입법예고 사항 및 예고문 작성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.
- 다. 입법예고방법 및 예고기간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.
- 라. 의견제출 및 처리를 규정함(안 제8조).
- 마.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교육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(전화 042-600-5643, FAX 042-600-5649, E-mail : wochoye@edurang.net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에 따라 교육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교육자치법규”란 대전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입법예고) ①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자치법규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(이하 “입법”이라 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

1. 학사제도
2. 시험
3. 입학금 및 수업료
4. 사용료 및 수수료
5. 교육정보화관련 제도
6. 그 밖에 시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

②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업무 주관과장은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제5조(입법예고문 작성 및 게재)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, 교육자치법규의 제명,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,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과 입법안 전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.

제6조(입법예고방법) ①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, 주요내용, 전문을 대전광역시 공보나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, 인터넷, 신문,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.

제7조(입법예고기간)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제출 및 처리)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서면(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)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③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청회) ①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공청회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행정절차법

**제38조(공청회 개최의 알림)**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, 관보·공보·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1. 제목
2. 일시 및 장소
3. 주요 내용
4. 발표자에 관한 사항
5.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
6.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
7.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38조의2(전자공청회)**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(이하 "전자공청회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전자공청회의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38조의3(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)**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②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. 다만,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1.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
2.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
3.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

③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공청회의 주재자·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9조(공청회의 진행)**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,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, 퇴장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.

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제39조의2(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)**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·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** ①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(이하 “입법”이라 한다)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

②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,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

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,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.

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.

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법제업무 운영규정

제20조(자치법규안 입법예고) ①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
